

제22조의2(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 오염방지법」 제2조에 따른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별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2호	100만원
5.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60만원
6.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5호	1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2 월 4일부터 시행한다.

◇수난구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법」의 개정(법률 제8623호, 2007. 8. 3. 공포·시행)으로 같은 법에서 위임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다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선박구난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구난대상 소형선박의 범위를 정하며, 법률에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2007년11월 2 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박명재

◎대통령령 제203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제2조제2항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합계액(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제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를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제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대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정의)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를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란 해당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로, “당해 행위”를 각각 “해당 행위”로, “1년동안”을 “1년 동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을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제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기타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를 “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각호의 기한내”를 “각 호의 기한 내”로,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를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제1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에 따라”로, “4월이내에 다음 각호”를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지주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

손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

제17조의6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회사를”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 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 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제18조제2항 중 “3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 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 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회사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 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제21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호”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한다.

제23조의4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행강제금 부과에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 : 50억원
2. 제1호 이외의 공사 입찰 : 5억원
3. 물품구매 또는 용역 입찰 : 5억원

③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달사

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2제2항”을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자진신고”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고”를 “자진신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때까지”를 “때까지 성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 “각목”을 “각 목”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최초”를 “두 번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제3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전의 제5호) 중 “각목 또는 제3호 각목”을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제3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제9장에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자격)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제53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4(조정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이유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법 제48조의6(조정 신청 등)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범위반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2. 별표 1 제1호가목

3. 별표 1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범위반협이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48조의6(조정 신청 등)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게 통지할 사항

가.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

나.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요구서(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사항

가.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

나.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와 성명 등 일반현황

다.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

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의7(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3조의8(조정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②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제53조의9(협회의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회의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

제64조의5를 제64조의6으로 하고, 제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5(결손처분) 법 제55조의8(결손처분)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6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 제2호가목 위반행위유형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 지배적지위남용 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 제6조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이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	-------------	------------------	---

대통령령 제1876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 중 “행위로서 이 영”을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203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을 “종료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31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지배기준을 정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의 전환신고를 허용하고,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 전환신고제도의 개선(영 제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사업연도 중에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과세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의 변경(영 제17조의6)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금융기관을 종전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되도록 함.

다. 기업결합 신고대상 범위의 축소(영 제18조)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대회사의 규모를 종전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회사로 하던 것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로 변경하고,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나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함.

라.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 등(영 제34조 신설)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은 입찰과 관련된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등(영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9까지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 위원의 자격, 조정의 절차,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부 령

◎행정자치부령 제399호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11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3호 중 “지적공부등(열람·등본교부)신청서”를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67호 중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결과부”로 하며, 같은 조 제68호 중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지적(경계복원·현황)측량결과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